정　　관

(101)

정　　관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제2조(목　적)

제3조(주사무소.지부 또는 지소)

제4조(공고 방법)

제2장 임원과 직원 및 회원

제5조(임　원)

제5조2(회　원)

제6조(임원의 임면)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의2(기술이사의 임용조건)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지부장)

제11조(직무대행 등)

제12조(대리인 선임)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4조(임직원의 보수)

제15조(임직원의 조직.정원 등)

제3장 사　업

제16조(사　업)

제4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제20조(의안제출)
제21조(긴급사항처리)
제22조(의사록)
제23조(이사회의 규칙)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 등

제24조(고문)
제25조(자문위원회)
제26조(기술전문위원)
제27조(특별연구위원)
제28조(수당 등)

제6장 자　　산

제29조(자　산)
제30조(자산의 관리)
제3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32조(기　금)
제33조(수수료.회비 및 기술지원비 등)
제34조(수수료 및 회비의 단수처리)
제35조(수수료 및 회비의 징수)

제35조의2(회비 위탁징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
제36조(회비의 강제징수)
제37조(회비의 결손처분)
제38조(회비 및 수수료 원부의 비치)

제7장 회　　계

제39조(경　비)
제40조(사업년도)
제41조(예산원칙)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3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44조(예비비)
제45조(예산의 전용)
제45조의2(적립금)
제46조(추가경정 예산 등)
제47조(결산서의 보고)

제8장 보　　칙

제48조(정관의 변경)
제49조(민법의 준용)
제50조(위임규정)
제51조(해　산)

부　　칙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정관

1985. 1.14	내무부장관	승인	2006. 3.28	개	정
1985. 7.11	서울민사지방	법원	2006. 6.30	개	정
	제 2 2 호	등기	2007.12.21	개	정
1989. 4.13	개	정	2009. 9.25	개	정
1989.10. 5	개	정	2011. 1. 1	개	정
1990. 4.24	개	정	2012. 1. 1	개	정
1991. 8.24	개	정	2014. 4. 3	개	정
1991.12.19	개	정	2016. 8. 1	개	정
1993. 2.10	개	정	2016.11.15	개	정
1993.10.20	개	정	2017.11.13	개	정
1994.12.23	개	정	2018. 7. 1	개	정
1995.12.29	개	정	2019. 7. 8	개	정
1996.12.20	개	정	2021. 3. 8	개	정
1998.12.30	개	정	2021.12.21	개	정
1999.12.30	개	정	2022.10.26	개	정
2001. 5. 7	개	정	2023.10.31	개	정
2001.12.24	개	정	2025. 8.29	개	정
2002. 6.22	개	정	2026.10.26	개	정
2003.12.26	개	정			
2004.12.29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Guns &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라 칭한다.(개정 2001.5.7, 2016.8.1)

제2조(목적)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화약류 안정도시험 및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0)

제3조(주사무소·지부 또는 지소)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지부 및 지소는 필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 한다.
(개정 1998.12.30)

③ 지부 및 지소의 기구도 전항과 같다.(개정 1998.12.30)

제4조(공고방법) 협회의 공고는 일간지·협회·경찰청·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한다.(개정 2008.1.1., 2025.8.29.)

제2장　임원과 직원 및 회원

제5조(임원)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감사와 기술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01.5.7)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이사.

3. 감사 1인.

제5조의2(회원)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4.3)

② 회원은 법령,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기타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비를 미납하는 등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3.8)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6.3.31)

1.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3.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자격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3.31, 2021.3.8, 2022.10.26)

1. 총포·화약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경찰공무원 치안감 이상, 일반직 공무원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민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총포·화약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자로서 공무원, 민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총포·화약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④ 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2항의 자격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3.31, 2021.3.8, 2022.10.26)

1. 총포·화약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경찰공무원 총경이상,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민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총포·화약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자로서 공무원, 민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총포·화약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⑤ 임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신설 2004.1.1, 개정 2014.4.3.)

⑥ 제3항, 제4항에서 “총포·화약 관련분야”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분야를 말한다. (신설 2023.10.31.)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의 선발.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1.1)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04.1.1)

③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1.1)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인 협회이사장, 상임이사, 처장 1인
(개정 2009.10.1., 2021.3.8., 2023.10.31.)
2. 위촉직 위원: 협회 고문, 기술전문위원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개정 2008.1.1., 2014.4.3., 2026.10.26.)

④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4.1.1)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8.12.30, 2021.3.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1998.12.30, 2021.3.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1998.12.30, 2021.3.8)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1998.12.30, 2021.3.8)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1998.12.30)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998.12.30)
6. 경찰청 산하 단체에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1998.12.30)
7. 임용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개정 1998.12.30, 2016.11.15, 2017.11.13)

제7조의2(기술이사의 임용조건) ①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06.3.31, 2021.3.8)

1. 총포.화약 관련분야 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 경력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총포.화약 관련분야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총포 또는 화약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② 기술이사로 임용되는 사람은 제7조제6호, 제7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3.8)

②임원의 임기는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1.3.8)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의 담당업무는 직제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연1회 이상 본회 및 지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이사는 담당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0)

제10조(지부장) 지부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직무대행 등) ① 이사장의 유고 시에 상임이사, 운영지원처장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0.1, 2021.3.8, 2023.10.31.)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협회와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사장 또는 그 이사는 본 협회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대표할 이사가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처장이 협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 10. 1, 2021.3.8, 2023.10.31.)

제12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협회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협회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01.5.7., 2021.3.8., 2025.8.29.)

② 이사장은 지부에 근무할 임시고용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5.7, 2021.3.8)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본회의 임직원은 보수, 실비, 기타의 급여를 받는다.
(개정 2021.3.8)

제15조(임직원의 조직.정원 등) 본회의 임직원의 조직, 정원, 인사 및 복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1.5.7)

제3장 사 업

제16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1.5.7)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자료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9.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1.5.7)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예산의 관리운영.

3. 업무에 관한 중요규정의 제정.개폐.

4. 권리를 상실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

5. 결손처분.

6. 중요한 위탁사업 수임에 관한 사항.

7. 협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01.5.7)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제출) 이사회의 의안은 이사장이 제출한다.

제21조(긴급사항처리)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서 추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이한 사항은 문서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규칙) 이사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 등

제24조(고문) ① 협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변호사 및 총포·화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5.7, 2021.3.8)

1. 협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10.26.)

4. 기타 이사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기술전문위원, 고문, 기타 총포·화약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이사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3.8., 2023.10.31., 2026.10.26.)

③ 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1.3.8., 2025.8.29.)

제26조(기술전문위원) ① 협회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기술전문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12.20)

③ 기술전문위원은 제25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1.3.8)

④ 기술전문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⑤ 전항(①~④)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술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요강에 의한다.(신설 2008.1.1)

제27조(특별연구위원) 장기간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 연구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고문 및 출석한 자문위원, 기술전문위원 또는 장기간 조사 연구하는 특별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자 산

제29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개정 2026.10.26.)
2. 법인.단체나 개인이 출연하는 동산 및 부동산.
3. 사업 또는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4. 기타 수입.

제30조(자산의 관리) ① 협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입

③ 기채 또는 1억원(현시가) 이상의 재산을 처분, 차입 또는 내용변경 등 주요사항은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개정 1994.12.23)

제3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협회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2조(기금)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두되 그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단체나 개인의 기부금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음 각 세목에 규정된 수수료 및 회비(개정 2016.8.1, 2021.3.8)

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검사.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의 수수료(개정 2009.10.1)

나. 회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회비

4.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기금으로 편입키로 한 것

제33조(수수료.회비 및 기술지원비 등) 수수료, 회비, 기술지원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비율로 한다.(개정 2001.5.7., 2025.8.29.)

1. 수 수 료

가. 총포.화약류의 검사, 시험 및 교육수수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별표18」에 정한 상한액으로 한다.(개정 2016.8.1., 2025.8.29.)

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수수료는「안전교육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8.29.)

2. 회 비

회원의 회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화약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4.3, 2016.8.1)

3. 기술지원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비 금액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가. 설계도면 검토 등.

나. 제품성능에 대한 기술지원.

다.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진단.(개정 2008.1.1)

(1) 제조업소

(2) 판매.수리.임대업소(개정 2018.7.1)

(3) 사격장

(4) 화약류 저장소

라. 모의총포 검사.

마. 발파진동 및 소음측정.

바. 화약사용 안전진단.

사. 화약류 안정도시험.

아. 분사기용 가스용기 검정.

(1) 형식 검정

(2) 형식 변경

(3) 개별 검정

자. 그 밖의 의뢰인이 위탁하는 기술지원.

4. (삭제 2025.8.29.)

5. 그 밖의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부대사업의 수익금.

제34조(수수료 및 회비의 단수처리)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및 회비의 징수) ① 회비는 연1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 제조, 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 또는 면허 시(갱신 포함)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하고,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잔여회비는 허가 또는 면허 취소시에 당월 분의 환급 청구권이 소멸하고, 당월 이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1, 2021.12.21)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업자에 대한 회비는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부과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1.1, 2014.4.3, 2022.10.26)

3. 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회비는 화약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 경찰서로부터 화약류 사용량을 통보받아 회비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1.1)

②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회비는 매년도 4/4분기에 부과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1.1)

③ 화약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회비는 매년도 1/4분기 중 전년도 제조.판매실적 및 매출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회비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1.1, 2012.1.1, 2014.4.3, 2022.10.26)

④ 화약류 수입업자에 대한 회비는 매년도 1/4분기중 전년도 실적자료를 근거로 회비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한다. 단,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부과 징수한다.(신설 2014.4.3, 개정 2019.7.8, 2022.10.26)

⑤ 수수료, 기술지원비는 해당 검사, 기술지원, 시험 또는 교육 등의 실시 시에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4.12.29., 2014.4.3., 2025.8.29.)

⑥ 회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회비의 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비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

⑦ 제1항의 경우 회비를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의 뜻을 표시한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14.4.3)

⑧ 협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비를 특별시·광역시·도 연락사무소 또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4.3)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제조·판매업자의 회비.

2. 총포소지자 및 화약류 사용자의 회비.

3. 화약류 제조·관리보안 책임자의 회비.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의 회비.

제35조의2(회비 위탁징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 ① 제3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위탁징수한 때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19.7.8)

② 협회는 회비징수에 유공한 사람에게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회비의 강제징수) 회비 납부의무자가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7조(회비의 결손처분) 협회는 회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회비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8)

1. 회비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때.

2. 회비징수액의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강제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3. 법률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비납부의무자가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때.

제38조(회비 및 수수료 원부의 비치) 협회는 회비 납입 의무자별로 산출기초 및 납입액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는 계수만으로써 갈음한다.

(개정 2009.10.1)

제7장 회　　계

제39조(경비)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징수되는 회비 및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1조(예산원칙) ① 수지예산은 모두 예산에 계상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계정을 따로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31)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 1994.12.23)

③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사업(3,000 만원 이상 소요)이 발생 하였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정계산서를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

제43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에 예산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예산의 월할비례액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예비비) ① 협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4.12.29)

제45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0만원 미만 액수의 목간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고 3,000만원 미만 액수의 항간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5.7)

제45조의2(적립금) ① 적립금은 일반 운용예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개정 1998.12.30)

② 적립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무회계규정 등에 의한다.(개정 1995.12.29)

제46조(추가경정 예산 등)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는 제42조에 준한다.

제47조(결산서의 보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3)

제8장 보　　칙

제48조(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직제, 인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5.7)

제5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신설 1998.12.30)

부　　칙

①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예　산) 이 정관에 의한 초년도 예산을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29)

① 이 정관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부운영 등에 관한 특별조치) 본 정관 및 협회의 모든 내부 규정상 시·도지부의

조직 및 운용과 지부장의 임용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은 1996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 유보하고 동기간 중에는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지도관(연락관)을 배치하여 지역단위의 일정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도관 운영계획”에 의한다.

부　　칙(1996. 12. 20)

① 이 정관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의 제7조 중 경찰청 산하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와 임원의 임용연령에 의한 결격사유, 임원의 임기의 적용은 개정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취업한 자에 한 한다.

부　　칙(1998. 12. 30)

① 이 정관은 199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30)

①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7)

① 이 정관은 200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①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비상임 임원의 선발.추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29)

① 이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8)

① 이 정관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30)

① 이 정관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①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5)

① 이 정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

①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

①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3)

① 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①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5)

①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3)

①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

① 이 정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8)

① 이 정관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8)

① 이 정관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① 이 정관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① 이 정관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31)

①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8. 29)

① 이 정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0. 26)

①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